

자조와 협동으로 호혜의 경제를 실현하는,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 2020년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20년 3월25일(목) 오후4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http://www.coop4a.or.kr>

# 하나 꽃피어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 순서

### 회의식 순

16:00~18:00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서기임명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의사일정 확정

안건토의

전차이사록 확인

제1호 의안 감사보고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건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제5호 의안 기타

폐회선언

기념촬영 및 저녁

## 전차회의록 승인

### 2019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2019년 3월 14일(목). 오후 4시.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

#### 순서

#### 회의식 순

17:00~18:00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서기임명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의사일정 확정  
안건토의

전차이사록 확인  
제1호 의안 감사보고서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건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6호 의안 기타  
권역별 회장 임명장 수여  
폐회선언  
기념촬영 및 저녁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회의 식순에 의거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 현재 의결권 조합 53개 중에 참석 29개 조합이 참여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래 식순에 의거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일동 : 네라고 답하여 동의하다.

서기 임명은 의장의 건의대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한미희를 임명해도 되는지를 묻고 모두 동의하여 확정하다

의사록 서명 날인인은 협동조합 다락 성민희이사장,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송준호이사장, 한국렌탈사업협동조합 손일균이사장 3인으로 정하다.

식순 보고를 하고 참석자 일동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식순에 전원 동의, 재청으로 통과하다.

### 제1호 의안 2018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송기찬(송기찬법무사)감사 : 3월5일에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다.

참석자 일동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전원 동의, 재청, 감사보고를 승인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 : 사업보고 및 결산 진행을 해도 좋을지 참석자의 동의를 구하다.

참석자 일동 :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식순에 전원 동의, 재청 박수로 통과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심의의 건

의장 : 자료로 보고하고 질문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다.

참석자 일동 : 특별한 질문과 의견 없이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여  
만장일치하여 통과하다.

의장 :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자료로 보고하고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다.

의장은 올해 시 활성화사업 예산안의 결정이 늦어졌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다.

참석자 일동 : 그 외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자 모두 원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여  
박수로 찬성하다.

의장 :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 제12조 3항 각 기초협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 한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원을 선출을 상정하다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임원 - 6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1	미추홀구협동조합 고문	미추홀중식협동조합	선철규
2	연수구협동조합 협의회장	창조인테리어그룹협동조합	홍경애
3	부평구협동조합 협의회장	사회적협동조합꿈앤끼	동석희
4	청년협동조합 협의회장	바디버든힐링센터협동조합	이창현
5	미추홀구협동조합 협의회장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손일균
6	서구협동조합 협의회장	연희심곡검암연심회상인협동조합	장영환

**의장 :** 정관 제12조 3항 권역별회장의 당연직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다.

**참석자 일동 :** 특별한 질문과 의견 없이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여 만장일치하여 통과하다.

**의장 :**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정관 제13조 6항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1명의 이사를 해임을 상정하다

해임하고자 하는 임원 - 1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1	이사	청소년단체협동조합 '청협'	박윤이한

**의장 :** 정관 제13조 6항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판단함에 따라 이사 1명을 해임하고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다.

**참석자 일동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의장은 정관 제5조 1항 회원은 본 협의회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 이에 관하여 정관개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개정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의장 : 정관 제5조 1항 회원은 본 협회회의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에 관하여 정관개정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회원 : 개별법으로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다.

의장 :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의결안 사항이라고 설명하다.

참석자 일동 : 원안에 대해 이해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 :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의장 : 기타 안건을 상정하다

김서규회원 : 회계보고는 사무국장이나 감사가 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문의하다.

의장 : 회의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다.

참석자일동 : 의장의 설명에 동의하다

의장 : 기타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참석자 일동이 없다고 하자 그럼 총회를 폐회하여도 될지를 묻다.

참석자 일동 : 네라고 답하면서 동의하고 재청하므로 이에 의장이 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록 서명 날인인

1.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송준호 이사장

(서명) 

2. 협동조합 다락 성민희 이사장

(서명) 

3.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손일균 이사장

(서명) 

## 제1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결산 감사 보고

**정관 제10조 감사의 업무**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별첨한 자료 참고

## 감사보고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에 따라 2019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1. 감사절차 요약

- ① 감사인 성명 : 송기찬
- ② 감사대상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2019년도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와 부속명세서
- ③ 감사일정 및 장소 : 2020년 2월 25일 협의회 사무실
- ④ 감사내역  
협의회의 수지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계좌별거래조회내역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 ⑤ 주요감사절차 개요  
감사를 위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열람, 검토, 대조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답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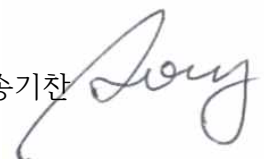
### 2. 감사의견

- ① 수지계산서, 지출결의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협의회의 회계상황을 정당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있어 보조금수입, 회비수입, 후원금 수입 등이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회원명부의 관리를 통해 적정한 회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회원조합의 특별후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출은 모두 통장거래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일한 계좌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장부가 정확히 작성되고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지출결의서 등 일부 내부 작성서류에 결재 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향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나 즉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② 2019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각종 행사 및 교육이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히 회원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목표한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점을 두었던 권역별 협의체도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고무적이나 여전히 일부 권역에는 미진함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관이나 규약을 통해 권역별협의체의 위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③ 이상 종합하여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2019년 사업 및 회계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감사의견을 보고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분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협회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20. 3. 3.

감사 송기찬





##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심의의 건

**정관 제19조 4항**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및 **5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19년 사업 및 결산에 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한 자료 참고

## [사업 내용]

### ※2019년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I. 사업 개요

기관명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사업명	2019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2019. 4월 ~ 12월		
사업비	총90,300,000원	보조금	90,300,000원
		지방예산	시비
			군구비
사업목적	<p>인천 시민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협동조합을 교육·홍보하여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킨다. 또한 협동조합 경영자 및 관계자에게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경영과 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추진실적	<p>□ 2019년 사업 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장터 운영 및 우수협동조합 제품 홍보·판매 지원사업(6월~11월)</li> <li>- 협동조합 주간행사 (6월~7월) : 토론회 실시와 협동조합 주간행사 장터 한마당 행사</li> <li>- 우수협동조합 탐방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8월 22일~8월 24일)</li> <li>- 협동조합 CEO 및 직원 실무교육 사업(7월16일~7월25일)</li> <l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8월~12월)</li> <li>-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사업(11월 6일~11월 20일)</li> <li>- 협동조합 온라인 장터 및 홍보 마케팅 사업(7월~12월)</li> <li>- 협동조합 권역 및 업종별 구성·운영 지원(5월~12월)</li> <li>-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교육사업(5월~12월)</li> </ul>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장터를 통해 협동조합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판매지원 함.</li> <li>- 협동조합 정의 및 가치, 협동조합의 7원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켜 줌</li> </ul>		

-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과 시민공원 광장 등에서 장터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협동조합 제품 판매 및 홍보를 함
- 타 지역의 우수협동조합을 방문 교류함으로써 협동조합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동조합 발전을 모색함
- 협동조합 우수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협동조합 취급 제품을 널리 홍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협동조합 온라인 홍보 블로그를 구축하여 모든 협동조합이 자사 제품 등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역별 업종별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함.
- 지속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 협동조합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경영능력을 배양함.
- 인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하여 협동조합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함

## II.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계획	추진실적
협동조합 장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포레 아파트 '송도 에듀숲 속 장터' 운영</li> <li>●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장터 한마당</li> <li>● 경인아라뱃길 '제2회 사회적경제 go 페스티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6월 1일 장터 개설 총33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9개 협동조합 참여)</li> <li>- 2019년 9월26일 장터 개설 총18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14개 협동조합 참여)</li> <li>- 2019년 11월 10일 장터 개설 총26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8개 협동조합 참여)</li> </ul>
협동조합 주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 개최</li> <li>●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관계자들과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토론회' 개최</li> <li>- 대전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로 대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터한마당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공원 중앙광장에서 사회적기업과 연합하여 총29개 업체가 장터 운영 (협동조합 14개 참여)</li> </ul>
협동조합 CEO 및 실무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16일 ~ 7월20일 까지 4회 교육 실시 (협동조합 온라인 및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주요 임원 이사장, 이사 및 일반 시민(협동조합 관심가) 참석</li> <li>- 협동조합 실무에 관한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마케팅 등 집중 교육</li> </ul>
우수 협동조합 방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부산, 진주 등 경남 일원의 협동조합 방문 및 협동조합 네트워크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리협동조합 등을 비롯 5개의 우수협동조합과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li> <li>- 협동조합 네트워크 행사 및 간담회 개최</li> <li>- 15명의 각 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사 참여</li> </ul>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홍보(블로그)구축</li> <li>● 협동조합 제품 및 용역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li> <li>● 홍보용 다이어리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개 우수협동조합 블로그 제작(현재 네이버에 실행 중)</li> <li>- 총64개 협동조합을 수록하여 3,000부 제작 2020년도에 배포예정</li> <li>- 580권 제작하여 협동조합 및 각 유관기관 배포 중</li> </ul>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6일 ~ 11월20일 까지 총 5회 아카데미 교육 실시 (협동조합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직관리 등 경영 수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li> <li>- 매 강좌 5회에 연인원 71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 일반시민이 참여</li> </ul>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8월8일)</li> <li>● 2019 Let's COOP!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라! (10월16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2회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청년 창업가의 만남으로 실시</li> <li>- 협동조합의 조직문화를 적용한 모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li> <li>- 토크콘서트-청년창업가와 만남과 대화</li> </ul>
권역 및 업종 별 협의회 운영 구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협동조합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교육 및 간담회 실시</li> <li>● 인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 개최 (12월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번의 간담회와 5회의 협동조합 사례 발표로 진행</li> <li>- 인천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하여 90여명 이상이 모임</li> <li>-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협동조합이 서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조직을 모색함</li> </ul>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및 고등학교 150학급 협동조합 교육 실시(연인원 4,046명 교육)</li> </ul>

### Ⅲ. 사업 추진 성과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였고, 권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동조합협의회 결성방안 논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여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판로 현실과 한계 등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모색함.

또한 권역별 협동조합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계속된 간담회를 실시하여 권역별 협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방안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음.

➢ 온라인 홍보(블로그)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다양한 홍보로 공산품과 식품, 서비스 업종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협동조합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축제나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하여 장터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서비스등 판매행사에서 소외되었던 협동조합들이 블로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틀마련. 아파트 장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협동조합이 많은 호응을 얻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생김.

➢ 협동조합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중·고등학생에게 협동조합을 교육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켜 주고 협동조합 경영자들에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동조합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 능력을 배양함.

또한 협동조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게 함

➢ 타 지역의 우수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우수협동조합 탐방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사례 발표를 들은 후에 질의응답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인천소재의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구상함

### Ⅳ. 자체평가

- 교육과 홍보 등을 다양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었음.
- 온라인 홍보 블로그 구축으로 판로개척이 장터행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 점을 널리 홍보하여 이를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우수협동조합 탐방은 2박3일 동안 부산, 경남 진주 등 강원지역의 사례를 탐방하여 인천 지역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함께 협동조합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졌음.  
국내 사례를 넘어 해외의 우수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협동조합의 비전을 확인해야 함
-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교육은 계속해야 할 사업이며 더 확대해야 되어야 함.  
작년에 비해 참여한 학급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강사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보강 교육 등이 계속되어야 함.
- CEO 교육 등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홍보 부족으로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점은 지속적으로 고민 할 필요가 있음
- 홍보 카타로그를 발행할 때 수록 업체 수에 연연하지 말고 각 협동조합의 특징 및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하고 배포처에 변화 등을 줄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낮으므로 홍보에 대한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함.
- 협동조합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초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홍보 체험 한마당 같은 장터 행사를 아파트 등 지역행사와 더불어 많이 참여하였지만 좀 더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행사시에 판매 전문가 등이 결합하여 상품 및 용역의 판로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2019년에 결성된 권역별 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 하고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경영이나 운영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더 많은 협동조합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함.

##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 사항

- 모든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네트워크의 날처럼 1회성이 아니고 지속하여 협동조합 간의 상생을 모색해야 함
- 운영비 부분을 여유롭게 편성하여 모든 사업을 기획, 교육,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늘어나야 함
-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한 현실임.

- 일정 규모의 장터를 일시적인 행사로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참여가 부진하므로 지속적인 판매사업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예산과 공간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행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바람.
- 기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인천시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

## VI. 예산 집행 실적

### 1. 총괄

(단위 : 원)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액(A-B)
계	90,300,000	90,300,000	0
주간행사	11,000,000	11,000,000	0
협동조합 CEO 및 실무교육 사업	3,000,000	3,000,000	0
우수협동조합 방문 사업	6,700,000	6,700,000	0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경진대회	6,000,000	6,000,000	0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4,600,000	4,600,000	0
장터 운영 및 우수협동조합 제품 홍보 판매 지원	15,000,000	15,000,000	0
온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블로그, 카타로그, 다이어리)	18,000,000	18,000,000	0
권역 및 업종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6,000,000	6,000,000	0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교육 사업	20,000,000	20,000,000	0

## [내부 회의 요약 보고]

### 1. 6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9년 3월14일(목요일)
- 장소 :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
- 참석인원 : 회원 53개 협동조합 중 29개 협동조합 참석

### 2. 이사회

일시 및 장소	주요 안건	의결사항
1월24일(목)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19년 협동조합협의 회 활성화사업 계획안 나.2019년 정기총회 개최 안	가.-사업계획서 미전달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 나.-총회 날짜는 3월12일 오후5시에 사회적경 제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사 해임건과 권역별회장의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선임
2월27일(수)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19년 사업계획 안 나.2019년 정기총회 안 다.이사진 변경안	가.-사업계획서가 늦어져 2018년도 계획서로 회의 나.-3월14일(목) 오후5시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세미나실 다.-이사 1명 해임건 -권역별 회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4월12일(금)오전11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19년 활성화 사업 계획 확정 안건 나.전국협동조합협의회 가입 안건 다.전국 사회적경제(대전) 참가 안건	가.-4월8일 확정 -4월부터 학교교육 사업부터 시작 나.-4월에 전국협의회 가입 -전국협 자료집에 인천협의회 회원명부 수록(회비 납입 협동조합) 다.-7월3일~5일(3일간) 대전에서 개최
7월10일(수)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2019년 상반기 사업 보고 나.7~8월 사업 일정	가.-각 사업 보고 나.-7월 CEO교육 일정 -3월14일(목) 오후5시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세미나실 -이사 1명 해임건
8월6일(화)오후5시 인천여성가족재단 회의실	가.2019년 우수협동조합 탐방 나.하반기 권역별 협의회 사업 활성화 논의 다.인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체결	가.-부산, 경남 진주 일원으로 8월22일~24일(2박3일) 우수협동조합 방문 나.-남동구 협의회장의 퇴임으로 송준호이사장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후임 결정 다.-8월6일 오후5시에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협약식 체결
10월8일(화)오후5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	가.하반기 사업 논의 나.각 권역별 협의회 다.2019년 네트워크의 날 논의	가.-잉여 사업비의 변경 나.-권역별 협의회 연합 간담회로 네트워크 구축 다.-2019년 12월5일 오후3시로 날짜 확정 -우수협동조합의 사례 발표 및 사례 공유 -이벤트 실시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



### 3. 권역별 협의회 간담회

날짜	회의명	장소
5.23	권역별회장단 기획회의	고용복지나눔협동조합 회의실
7.30	미추홀구협동조합협의회 간담회	두레온 회의실
8.21	부평구협동조합협의회 1차 간담회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9.16	서구·중구·동구 협동조합 간담회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9.18	부평구협동조합협의회 2차 간담회	인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10.8	권역별회장단 기획회의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회의실
10.29	서구·중구·동구 및 부평구 연합간담회	동화마을아트컴퍼니협동조합
12.13	미추홀구협동조합협의회 2차 간담회	학익경복궁

### 4. 교육위원회

- 찾아가는 학교 협동조합 기획회의 2회  
제1차 기획회의 5월2일 강의 시연회  
제2차 기획회의 12월26일 교육 평가회 및 강사 간담회
- 전문가 양성아카데미 기획회의 1회  
제1차 기획회의 9월19일 아카데미 concept 및 강사 섭외

[결산 보고]

수 지 계 산 서 (2019.1.1.~12.31)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2019.1.1.~12.31)	전기(2018.1.1.~12.31)	비고
<b>수 입 총 계</b>	<b>113,305,559</b>	<b>88,099,327</b>	
1.회 비			
회 비	12,900,000	10,200,000	
특 별 회 비	850,000	510,000	부산위크샵 회비
후원금1)	700,000		네트워킹 후원금
후원금2)	5,310,000	4,000,000	후원금
<b>합계</b>	<b>19,760,000</b>	<b>14,710,000</b>	
2.경상외수입			
시 사업 보조금	90,300,000	70,000,000	
사업수입			
이자수입	6,742	4,328	예금이자
교 육 수 입 금			
행 사 수 입			
협의회 이용기금		600,006	통장이월금, 이용기금
<b>합계</b>	<b>90,306,742</b>	<b>70,604,334</b>	
전 기 이 월	3,238,817	2,784,993	
<b>지 출 총 계</b>	<b>107,635,100</b>	<b>84,860,510</b>	
1.사업비			
시 활성화사업비	90,857,390	70,655,370	시사업비,사업비추가분,
2.활동비			
정 책 활 동 비	805,000	700,000	축하 및 근조화환
홍 보 활 동 비	355,000	495,000	문자전송료
교 육 활 동 비			
조 직 지 원 비	2,300,000	200,000	전국협의회비, 인사넷회비
연 대 활 동 비	86,500	142,000	간담회식대, 네트워킹 식대
행 사 비	413,000	1,401,850	총회(현수막,자료집,식대 등)
3.관리비			
인 건 비	10,100,000	8,600,000	사무급여, 상여금
경 비	253,560	327,550	사무실임대료
회 의 비	662,400	538,000	이사회식대 및 기획회의식대
통 신 비	249,260	355,020	사무실전화비,
업 무 추 진 비	1,152,850	1,269,200	사무실식대 및 수용비
제 잡 비	2,840	130,070	우편요금(서류 등기요금)
소 모 품 비		8,250	문구류(도장)
지 급 수 수 료	18,400	20,400	이체수수료,공인인증수수료
교 통 비	378,900	17,800	전국협의회, 기타
예 비 비		84,860,510	
<b>당기잉여금</b>	<b>5,670,459</b>	<b>3,238,817</b>	

## 제3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제19조 4항**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및 **5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0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한 자료 참고

## [2020년 사업계획안]

1. 2020년도 핵심 방향 :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도약을 위한 생태계 구축

2. 2020년도 사업 기초 : 회원의 회비 납부 활성화로 협의회 재정 안정 및 사업 능력 신장

### 3. 주요 사업 개요

#### (1) 네트워크 사업

가. 목적 : 기본법 협동조합 및 개별법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사이의 상호거래 및 협력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

나. 사업 방식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예산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기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다. 사업 기간 : 3월부터 각 권역 및 업종별로 나누어 진행, 연말 보고대회 개최

#### (2) 협동조합 주간 행사

가. 목적 :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고 이에 걸 맞는 사업을 발굴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의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을 이끌어 낸다.

나. 사업 방식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낭비성 전시성 사업을 제거하고 학술행사 및 교육,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인천시민과 협동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구성할 수 있는 전담팀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다. 사업 기간 :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 (3) 교육, 홍보사업

가. 회원조합들의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

- 회원 워크숍(연 2회) :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협동조합 간 상호 교류 기반 확보(상반기)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협동조합 미래상 정립 워크숍(하반기)
- 밴드 및 협의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는 협동조합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등을 개발
-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에 당사자로서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홍보 사업에 주체로 참가하여 단위 협동조합의 욕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
- 개별 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 및 임원 교육에 협의회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협동조합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나. 대중교육

- 시민의 협동조합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강좌 개설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초·중·고 교육 실행 - 2019년에 이어 교육청과 협력 및 지역 교육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찾아가는 학교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 경진대회)

## 다 홍보와 캠페인

- 협동조합 홍보, 장터 개설 및 백화점 등과 연계한 협동조합 한마당 실시
-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입점 판매전을 통한 협동조합 제품 홍보
-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나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인천협동조합협의회 홈페이지를 인천시 홈페이지 및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발생하면 의견 수렴 후 적극 시행

## (4) 지역사회 기여사업

- 인천 사회적 금융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금 조성에 기여
- 저소득층 김장 나눔 행사 등 관련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행사 기획
- 회원 조합의 사회적 기여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공유

## (5)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및 연대 사업

### 가.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한 연대 사업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조례 등 제정 및 개정 관련 검토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사업 추진 및 모색(행사, 간담회, 교육 등)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등 시 관련 위원회에 적극 참여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민 거버넌스 또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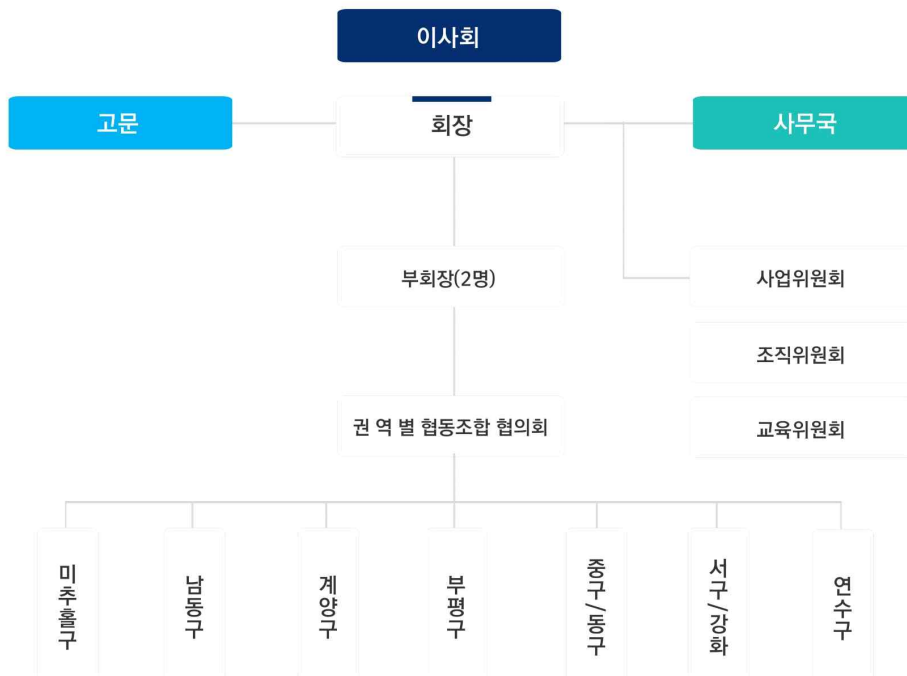
### 나. 전국협동조합협의회에 적극 참여

- 각 지역 협동조합협의회와 공동 사업 참여
- 중앙 정부의 법, 제도, 개선활동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b>단체명</b>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b>회장</b>	조병우(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b>소재지</b>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29번길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1302호		
<b>전화번호</b>	032-725-3324	<b>FAX</b>	032-725-3325
<b>E-mail</b>	coopofcoop@hanmail.net	<b>홈페이지</b>	http://www.coop4a.or.kr
<b>단체설립일</b>	2014년2월6일	<b>사업자등록번호</b>	131-82-80793
<b>설립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li> <li>○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별·직능별 협의회 결성 지원.</li> <li>○ 협동조합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li> <li>○ 인천시민에 대한 협동조합 홍보 및 교육</li> <li>○ 협동조합과 관련한 정책 제안</li> <li>○ 협동조합 관련 법률 및 조례 재·개정 운동</li> <li>○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 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li> </ul>		

조직도



# 요 약

□ **비전** : 함께하는 협동조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

□ **목표** : 협동조합 활성화와 협동조합 가치 실현

□ **추진방향**

-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및 가치 확산
-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 역량 강화
-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지원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2020년 사업내용**

- 협동조합 설립 확대 : **560개소** ← 19년 506개소(일반411,생협20,사협75)
- 2020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4분야 / 11사업, 90,300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사업시기
<b>총 계(4분야/11개 사업)</b>		<b>90.3</b>	
①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가치 확산	①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중간지원기관 협조
	②협동조합 학교 교육 추진	25	4~12월
	③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4회)	3	6~8월
	④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5	9월~11월
②협동조합 역량 강화 지원	⑤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및 주간행사 개최	10	6~7월
	⑥협동조합 홍보물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10	연중
	⑦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경진대회	4	7~10월
	⑧우수협동조합 성공 사례집 제작(신규)	5	4~12월
③협동조합 판로 개척 지원	⑨협동조합 장터 운영 및 제품 홍보·판매 지원	13	5~10월
④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⑩업종별·권역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7	3~12월
	⑪우수협동조합 탐방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8.3	6~8월

# 2020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
- 협동조합 활성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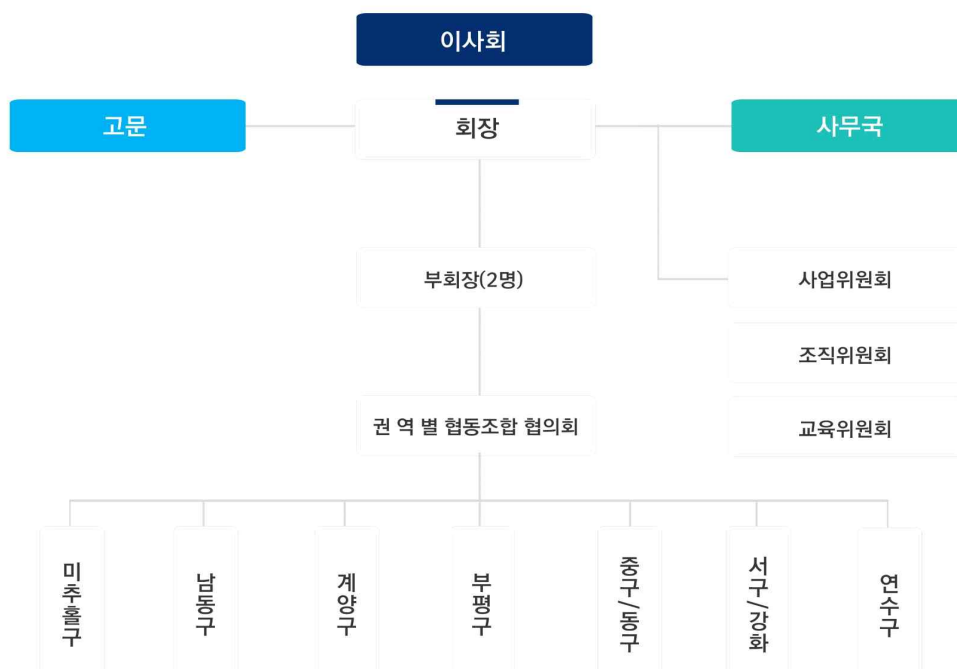
## I. 추진방향

-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의 자립·자조·상호이용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500개로 확대(19년 말 현재 조합수 488개)
- 협동조합과 타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업 분위기 조성
-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II. 추진체계

- 조직도

조직도





### III. 사업추진계획

#### □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가치 확산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동조합 친화적 시민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교육 강화

##### ○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운영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전화번호 725-3324, 883-7888, 446-9492)
- 운영장소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 전지역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 )
- 주요내용 : 협동조합 설립 준비사항, 절차·설립신고·등기 등의 상담, 협동조합 사이의 협업을 위한 연계 등 경영 지원, 조합원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사업비 : 비예산(\*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회원 협동조합 협력)

##### ○ 협동조합 학교 교육 추진

- 목적 : 협동조합의 정의 및 가치를 체험 등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협동조합 근간 마련 및 미래 진로탐색에서 협동조합 역할 증진
- 시기 : 2020년 4월 ~ 12월
- 내용 : 미래세대(초·중·고등학생)의 협동조합 이해와 전파
- 사업비 : 2,500만원

##### ○ 협동조합 CEO 및 실무자 교육

- 운영횟수 : 2020년 6월~8월(4회)
- 교육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및 실무 담당자
- 주요내용 : 노무·세무·법무 홍보 등 협동조합 경영에 바로 사용 할 수 지식 습득 및 참여자 경험 상호 공유
- 사업비 : 300만원

## ○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시 기 : 2020년 9월 ~ 11월
- 교육대상 : 교육관련 종사자 및 협동조합 관계자
- 주요내용 : 교육관련 협동조합 관련자 및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협동조합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자유학기제 등 진로지도와 관련한 협동조합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이 과정을 통해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및 석 박사 과정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교육을 편성
- 시 업 비 : 500만원

## □ 협동조합 역량 강화 지원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 법무, 노무, 세무 등 전문분야의 상담, 컨설팅, 교육 및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

## ○ 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 행사 개최

- 시 기 : 2020. 6. 22.(월) ~ 7. 4.(토)
- \* 협동조합의 날 : 2020. 7. 4(토) / 협동조합 주간 : 2020. 6. 22.(월) ~ 7. 4.(토)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제1항)
- 장 소 : 인천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및 인천시청 등
- 내 용 : 기념식 및 부대행사, 토론회 등
  -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기념사, 축사, 우수조합 표창, 부대행사)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민 체험 및 참여마당, 이벤트 등
- 사업비 : 1,000만원

## ○ 협동조합 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 1. 협동조합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 제작시기 : 2019년 10월~12월(1회)
- 내 용 : 협동조합 개요, 소식, 주요상품 및 서비스 등 소개
- 제작형태 : A4크기의 무가지 신문 형태 및 카타로그 등

- 배포방법 : 시·도 홍보, 협동조합 관련 기관 등 배포
- 사업비 : 500만원

## 2. 온라인 홍보

- 홍보기간 : 2020년 5월~12월
- 내용 :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신규 협동조합 웹사이트 및 제품 등록
- 사업비 : 500만원
- 총 사업비 : 1,000만원

### ○ 미래세대를 위한 협동조합 창업경진대회

- 개최시기 : 2020년 7월 ~ 10월
- 참여대상 : 청소년, 대학생
- 내용 : 협동조합 창업 관련 교육 및 창업아이템을  
협동조합으로 창업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 시상
- 사업비 : 400만원

### ○ 우수협동조합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제작

- 탐방 및 제작 시기 : 2020년 4월 ~ 12월
- 참여대상 : 인천시 관내 우수 협동조합 및 신규 협동조합
- 내용 : 우수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협동조합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사례집 제작
- 사업비 : 500만원

### □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지원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이해 증진,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추진과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 **협동조합 장터 운영 및 우수협동조합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시 기 : 2020년 5월 ~ 10월
- 개설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공원, 지하철역 및 광장 등 판매 및 홍보효과가 큰 장소
- 주요내용 : 우수 협동조합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장터 운영
  -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인천상생유통센터와 연계 운영
- 사 업 비 : 1,300만원

□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권역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구성방법 : 군·구 권역별로 협의회 구성 운영
  - \* 권역(6) :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부평, 서구강화군, 동구중구
- 시 기 : 2020년 4월~12월
- 회의개최 : 매월, 연말 사업보고대회 및 네트워킹 대회
- 주요내용 : 협동조합 노하우(Know-how) 공유, 제품 홍보 및 판매 협력 방안 논의
- 사 업 비 : 700만원

○ **우수 협동조합 탐방 및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개최시기 : 2020년 6월~8월(1회))
- 참여대상 : 30명
- 내 용 : 우수협동조합 견학, 소양교육, 조합 간 정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 업 비 : 830만원

## ○ 협동조합 사업 보고 및 종합 토론회

- 시 기 : 2020년 12월
- 대 상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관련자
- 사업방법 : 2020년 사업 총괄 보고 및 평가, 2021년 사업 토론회
- 사 업 비 : 비예산 (\*권역별 협동조합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과 연계)

## IV. 기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 인천 협동조합 상설 교육 및 체험장 운영

- 개 요 : 교육 및 체험을 위주로 하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교육 및 체험 공간을 개설 상시 운영한다.
- 일 정 : 2020년 4월 ~ 12월
- 내 용
  - 공동 교육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 홍보 및 운영비용을 줄여 인천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자유학기제에 대응
  - 공동 공간의 운영으로 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
  - 공동 공간의 도입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의 질을 높임
  - 공동 공간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각 협동조합의 개별 상품을 협업화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단위 협동조합 생산품과 서비스의 본질, 가치, 스토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규격화 해 고부가가치로 판매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방안
  - 인천사회적기업 홍보·판매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 인천 교육청 관련 시설 등 시내 유휴공간을 이용 공간 마련
  - 자유학기제의 체험 공간에 대한 시 교육청이나 각급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사 업 비 : 비예산

### □ 권역별 협동조합 협의회 주치 협동조합 박람회 및 홍보 장터

- 내 용 : 권역별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주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립 및 협동조합 가치, 사품 홍보를 위한 공동 행사
- 일 정 : 2020년 5월~10월

○ 내 용

- 권역별 협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속 및 협동조합의 가치, 상품 홍보
- 인천시 협동조합 상품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권역별 협동조합의 매장을 이용해 상시 구매 할 수 있는 유통망 설립의 전초 행사
- 권역별 유통망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판매망 구축

○ 추진방안

- 권역별 협의회 구성 후 네트워크 우수 사례 발굴
- 권역별 협의회와 협동조합 자주·자립·자치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단이 결합해 행사기획 및 준비

○ 사 업 비 : 비예산 (\*타 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강좌 개최**

- 목 적 :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 관계 구축
- 시 기 : 2020년 4월 ~ 12월
- 내 용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접합 및 사이버 교육 편성
  - 각 군·구 평생학습교육원에 협동조합 시민강좌 개설 유도
  - 협동조합 강사 파견 교육 및 순회 설명회 개최
- 사업비 : 비예산

[예산 보고]

2020년 사업 예산안

(단위 원)

계정과목	당기(2020.1.1.~12.31)	전기(2019.1.1.~12.31)	비고
<b>수입총계</b>	<b>119,177,459</b>	<b>113,305,559</b>	
1.경상수입			
회비 1)	16,200,000	12,900,000	이사회비 20×360,000=7,200,000 일반회비 75×120,000=9,000,000
특별회비	7,000,000	6,860,000	회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현금 및 물품 등
2.경상외수입			
사업수입	90,300,000	90,300,000	
이자수입	7,000	6,742	예금이자
교육수입금			
행사수입 2)			
전기이월	5,670,459	3,238,817	
<b>지출총계</b>	<b>115,530,000</b>	<b>107,635,100</b>	
1.사업비			
시활성화사업비	90,300,000	90,857,390	시사업비 전액, 추가금
2.활동비			
정책활동비	1,500,000	805,000	각축하 및 근조행사
홍보활동비	500,000	355,000	문자이용료(문자전송)
조직지원비	2,500,000	2,300,000	전국협의회 회비 등
연대활동비	300,000	86,500	간담회식대(추가)
행사비	800,000	413,000	총회(자료집,현수막,식대)
3.관리비			
인건비	13,000,000	10,100,000	사무급여 및 상여금
사무실관리비	300,000	253,560	사무실임대료
회의비	1,000,000	662,400	이사회 및 기획회의
통신비	500,000	249,260	사무실전화비
업무추진비	2,000,000	1,152,850	사무실식대 및 접대비
소모품비	200,000	2,840	협의회 사무실 소모품
교통비	600,000	378,900	전국협의회, 각 회의 참석
지급수수료	30,000	18,400	이체수수료, 공인인증수수료
예비비	2,000,000		
<b>당기잉여금</b>	<b>3,647,459</b>	<b>5,670,459</b>	

1) 회원 20명 증가를 예상

2) 각종 행사에 참가비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입

##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정관 제12조 1항**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4기 임원을 선출하고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 제4기 임원

회장 : 1명, 이사 : 20명, 감사 : 1명

순	구 분	조 합 명	성 명	비 고
1	회 장	한국컴퓨터산업협동조합	조 병 우	연임
1	이 사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송 경 수	연임
2		인천종합물류협동조합	이 상 근	연임
3		나눔경제경영협동조합	송 준 호	연임
4		협동조합 꿈꾸는문화놀이터 뜻	정 윤 호	연임
5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정 세 일	연임
6		협동조합 다락	성 민 희	연임
7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	권 덕 진	연임
8		한국렌탈판매협동조합	손 일 균	연임
9		한국포토저널협동조합	김 노 천	연임
10		글로벌플라워협동조합	정 미 경	연임
11		인천광고물협동조합	채 성 일	연임
12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장 인 실	연임
13		협동조합청솔주거복지센터	문 영 록	연임
14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동 석 희	연임
15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선 영 숙	신임
16		미래사회건강교육협동조합	김 의 연	신임
17		퍼실리테이션클럽협동조합	이 혜 연	신임
18		인천상품판매협동조합	소 병 길	신임
19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	류 상 희	신임
20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이 명 선	신임
1	감 사	송기찬법무사	송 기 찬	연임

## 제5호 의안 기타 안건

## 제6호 의안 폐회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

2014.02.06. 제정  
2015.03.19. 개정  
2016.03.08. 개정  
2018.03.14.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Incheon Cooperative's Conference 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실천한다.

#### 제3조 (사무소)

본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인천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및 연대 사업
2. 회원단체의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경영·홍보·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인천 협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개발사업

4.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 및 사업 관련업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협회회의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준회원 : 기타 협동조합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3. 특별회원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의 설립, 교육 훈련, 경영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제6조 (가입과 탈퇴)

본 협회회의 회원가입과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은 제5조를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협의회가 구성되어진 지역은 기초협회의 가입과 동시에 본 협회에 가입되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3. 본 협회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 회원가입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의 탈퇴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소정의 회원탈퇴서가 협회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협회회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회원은 연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회회가 결정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연회비,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 (권리제한과 징계)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협의회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협의회 명예를 손상한 자
  - ③ 정관·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①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10일전에 그 회원에 한하여 권리제한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30인 이내(기초협회의 회장 포함)
4.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 (감사)

본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협의회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② 제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 ③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기타 협의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일

###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며,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3. 각 기초협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한다.
4. 단, 회장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5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1. 임원 및 감사는 제11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① 제8조의 회원제명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된 회원은 당연 퇴임한다.
2.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①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②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제16조 (자문위원)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계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이사회회의 의결로 추대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 제18조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이사회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③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 요청하는 경우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회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사회

###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본 협의회회 최고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각 기초협의회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22조 (운영)

1.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단,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제23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1. 협의회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회장 및 사외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초협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

#### **제24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본 협의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 조직국장 1인을 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경우 회원 단체나 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포괄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 (기초협의회 설립 및 운영)**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기초단체는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기초협의회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운영위원회**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일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초협의회장, 업종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겸임한다.

####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
2.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3.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29조 (수입)

본 협회회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30조(운영)

1. 협의회 모든 재정은 사단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2. 제4조 4항에 의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정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제31조 (회계연도)

본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32조 (의결 규정)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회원 및 임원의 제명,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33조 (위임 규정)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둔다.

1. 모든 회원은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한 대리인에게 본인이 직접 날인한 서면 위임장을 통해서 회원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단, 회장은 회원인 단체나 기관의 대표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 **제34조 (서면 의결)**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해당 조직에 속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35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은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36조 (회의록의 작성)**

본 협의회는 모든 정관 조직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하며, 모든 회의록을 회원 전체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 **제37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